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한국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8.8조제1항가호 및 제10.15조제1항 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¹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²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¹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8.8조제1항 및 제10.15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8.8조제1항가호 및 제10.15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8조제1항다호 및 제10.15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7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0.5조(내국민 대우), 제10.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11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외국인” 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2012호,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4616호, 2013.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0호, 2013.6.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 1)(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1919호, 2013.7.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1929호, 2013.7.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통 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 · 정비 · 해체 및 재활용 서
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
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정검사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
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4519호, 2013.4.2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법률 제11873호, 2013.6.7)
	주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68호, 2012.10.1)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5호, 2013.4.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유보내용	외국인은 가.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또는 나.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1860호,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4.17)

유보내용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
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
설한다.

분야	도 · 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p>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2074호, 2013.8.13)</p> <p>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p> <p>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p> <p>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4.18)</p> <p>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2107호, 2013.8.13)</p> <p>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총리령 제1016호, 2013.3.23)</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508호, 2012.10.22)</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1010호, 2013.3.23)</p> <p>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2390호, 2014.1.28)</p> <p>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24800호, 2013.10.16)</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6조(별표14)(총리령 제1041호, 2013.10.25)</p> <p>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985호, 2013.7.30)</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11984호, 2013.7.30)</p>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 나. 의료기기, 또는
-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가 .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 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 나. 식품공급 서비스
-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 · 소매 유통업은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유보내용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약
국을 설립할 수 없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8.6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2025호, 2013.8.6)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2023호, 2013.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1647호, 2013.3.2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2092호, 2013.8.13)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도선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1756호, 2013.4.5)

유보내용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 및 제135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p><u>투자</u></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p> <p>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p> <p>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p> <p>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p> <p>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는 해당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분야	운송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2026호, 2013.8.6)
유보내용	<p>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2(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p>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항공기 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강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별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 · 산림화재관리 · 항공광고 · 비행훈련 · 항공지도제작 · 항공조사 · 항공살포 · 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p>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2045호, 2013.8.13)

유보내용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306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 11933호,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제41조 의2(국토교통부령 제19호, 2013.7.11)

유보내용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사업을 인수한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p>
조치	<p>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 (법률 제12035호, 2013.8.13)</p> <p>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p> <p>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기간공중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특정공중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한다.</p> <p>기간공중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p> <p>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 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가. “의제외국인” 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이나 규정상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률 제12634호, 2014.5.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115호, 2014.7.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23919호, 2012.6.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 · 리스 · 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2107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총리령 제1016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 리스 ·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유보내용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2091호, 2013.8.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0524호, 2011.4.4)

유보내용

한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 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1825호, 2013.5.28)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8920호, 2008.3.21)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1823호,
2013.5.28)

유보내용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
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
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
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
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
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10321호, 2010.5.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11962호, 2013.7.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오직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 (법률 제10866호, 2011.7.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1845 호, 2013.5.28)

유보내용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39호, 2014.10.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3.14)

유보내용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10570호, 2011.4.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중개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 · 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11882호,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86호, 2013.8.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p>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p> <p>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p> <p>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p> <p>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법률 제12299호, 2014.1.21)</p> <p>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1928호, 2013.7.6)</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p> <p>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제60조(법률 제11998호, 2013.8.6)</p> <p>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7조(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p> <p>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5.22)</p> <p>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법률 제11943호, 2013.7.17)</p> <p>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온천법 제7조(법률 제11896호, 2013.7.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가, 건축전문가로 등록하고 건축사무소를 설치한 한국 건축사자격자와 공동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2093호, 2013.8.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668호, 2013.3.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853호, 2012.6.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64호, 2012.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3년 10월 29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11048호, 2011.9.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2012.7.27)

유보내용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12036호, 2013.8.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4847호, 2013.11.20)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11622호, 2013.1.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24665호, 2013.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유보내용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절반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 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 · 약사 · 수의사 · 한약사 · 의료기사 및 유아 · 초등 · 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조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법률 제11770호, 2013.5.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리고
 -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24628호, 2013.6.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57호, 2012.6.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수의사법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11354호, 2012.2.22) 민법 제32조(법률 제11728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내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사무소를 설치한 면허 받은 수의사만이 수의 또는 수생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 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률 제11915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 제11713호, 2013.3.2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1464호, 2012.6.1)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1803호, 2013.5.22)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11750호, 2013.4.5)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1965호, 2013.7.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4543호, 2013.5.2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799호, 2013.10.10)

유보내용

한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도록 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24183호, 2012.11.20)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 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0.11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022호, 2013.3.23)

유보내용	<u>투자</u>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장이 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 나. 한국의 국민이 아닌 인이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 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 현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뉴질랜드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정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1641호, 2013.3.22)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종자산업법 제42조(법률 제11704호, 2013.3.23)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2059호, 2013.8.1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 호, 2013.5.1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 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4조(내국민 대우) 및 제8.6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p>
조치	<p>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48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법률 제12093호, 2013.8.13)</p> <p>방송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p> <p>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12093호, 2013.8.13)</p>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p>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p> <p>한국방송공사(KBS) 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p> <p>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p> <p>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 · 지방정부 또는 한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p> <p>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 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 · 음</p>

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한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그리고
-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영화: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 나. 애니메이션: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 다.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그러나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국내 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60퍼센트 이하가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보도·오락·드라마·영화·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나.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해당 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용량을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³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02호, 2013.5.27)
	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0호, 2013.12.4)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KEPCO)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DHS)용 열병합발전(GHP) 설비를 포함한 발전 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³ 부속서 II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⁴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13.8.9)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KOGAS)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⁴ 부속서 II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주해

1. 이 부속서의 뉴질랜드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뉴질랜드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6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2.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3. 뉴질랜드 유보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다. **조치**는 유보된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유보항목이 적용되는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4.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유보항목 해석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전체적으로 고려된다.

뉴질랜드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조치 1993년 회사법
1993년 재무보고법

유보내용 투자

회사법 및 재무보고법에 따라 수립된 뉴질랜드의 재무보고 제도와 합치되게, 다음의 해외 비상장 회사는 기업등록소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되고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
- 나.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대기업으로서, 의결권의 25퍼센트 이상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행사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지분이 다음에 의하여 보유되는 모든 대기업
 - 1)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자회사 또는 법인
 - 2)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법인, 또는
 - 3) 뉴질랜드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인
- 다.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자회사 또는 법인인 모든 회사

다음의 기준 중 최소한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대기업으로 본다.

- 가.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 자산이 1천만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
- 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 매출액이 2천만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 또는

다.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규직에 상당하는 피고용
인이 50인 이상

해외 회사가 이미 기업등록소에 감사받은 기업집단 재무
제표를 제출한 뉴질랜드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최혜국 대우(제8.5조)
조치	1953년 특허법 S.100(2) (a)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특허 변호사의 등록은 1953년 특허법 S.100(2) (a)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영국국민 또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제한된다.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2001년 낙농업 구조개혁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2001년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 및 규정은 가축개량회사(LIC)가 주식회사화되거나 그 밖의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가 그 회사가 보유하는 관리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축개량회사(LIC)가 청산되거나 뉴질랜드의 회사명부에서 삭제되는 경우, 또는 뉴질랜드 정부가 상기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받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다른 낙농 회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과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국적과 거주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은 가축개량회사(LIC)에 정보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젖소 검사에 관련되는 정보에 적용된다.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은 또한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에의 접근이 뉴질랜드 낙농업에 유익하지 아니하거나 해로운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며, 국적 또는 거주지 사항 및 정보의 이용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 조건들은 정보의 이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은 가축개량회사(LIC)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인을 제한하며, 이 제도는 담당 장관의 동의 없이는 개정될 수 없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코러스 유한회사 정관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코러스 유한회사 정관은 단일 해외 실체가 49.9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뉴질랜드 정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이사회의 최소 절반은 뉴질랜드 시민일 것이 요구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조치	1989년 무선통신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1989년 무선통신법상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를 위한 대리인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을 위한 인가나 관리권의 취득, 또는 그러한 인가나 관리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기업 혁신고용부의 최고 행정관의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농업 및 농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p>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상, 뉴질랜드 정부는 양봉, 과수재배, 흡재배, 사슴 사육 또는 사슴 사냥으로부터 얻은 생산물, 또는 염소의 생산물, 즉 염소의 털이나 섬유(이하 “일차생산물”이라 한다)의 생산자가 일차생산물의 판매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은 독점판매 및 취득권한(또는 그 이하의 권한)을 보유한 법정 판매당국의 설립, 그리고 다음과 같은 측면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의 제공을 규정한다.</p> <p>가. 판매당국의 기능, 권한, 임명, 구성원 및 해체</p> <p>나. 판매당국의 사안 관리</p> <p>다. 판매당국에 의한 일차생산물의 취득 및 그렇게 취득한 일차생산물의 가격책정과 지불방식과 관련된 사안</p> <p>라. 일차생산물의 생산, 유통, 허가 및 판매와 관련된 사안</p> <p>마. 일차생산물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과 관련된 사안</p> <p>바. 판매당국의 목적상 요구되는 정보의 취득</p> <p>사.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과 관련된 위반행위 및 처벌에 대한 규정</p>

분야

항공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1990년 민간항공법
장관 지침

유보내용

투자

면허를 받은 항공운송기업만이 뉴질랜드의 국제 항공사로서 정기 국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항공운송기업만이 뉴질랜드 내에서 외국 국제 항공사로서 연안운송을 포함한 국제 정기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부 장관 또는 차관 중 어느 한쪽이 국제 항공 서비스 면허의 발급을 결정한다. 비정기 항공 운송 서비스는 적절한 면허 또는 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지침에 따른 교통부 차관의 승인 중 어느 하나가 요구된다. 그러한 결정은 뉴질랜드의 양자 및 다자 간 항공 서비스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면허는 항공사가 뉴질랜드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거나, 뉴질랜드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분야	항공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2009년 뉴질랜드 항공 정관
유보내용	<p><u>투자</u></p> <p>뉴질랜드 정부의 허가가 없는 한, 외국 국민은 뉴질랜드 항공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p> <p>가.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 또는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과 ‘관련된’ 어떠한 인도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서면 동의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뉴질랜드 항공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가질 수 없다.</p> <p>나. 뉴질랜드 항공의 본점과 주 사업장은 뉴질랜드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p> <p>다. 이사회에서 최소 3인은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한다.</p> <p>라. 이사회의 과반수는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p> <p>마. 이사회 의장은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p> <p>바. 뉴질랜드 항공은 뉴질랜드 내에서의 설립 및 등록이 지속되어야 한다.</p>